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78
----------	-------

발의연월일 : 2025. 8. 14.

발 의 자 : 고민정 · 김문수 · 민형배
임호선 · 김한규 · 김영배
윤건영 · 이기현 · 문대림
박지원 · 오세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음.

교원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갇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

심지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권한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제한의 범위와 정

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학교에서 폭넓은 정치·사회적 의제로 교육이 이뤄지고 교육 주체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제한함(안 제53조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公務員(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을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립학교교원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政務職公務員”을 “정무직공무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選舉와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와 地方議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 ----- ----- -----. ----- ----- ----- ----- ----- ----- ----- -----.
1. 「국가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區分)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u>公務員(政務職公</u>	1. ----- ----- ----- -----. ----- ----- ----- ----- ----- ----- <u>공무원[정무직공</u>

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6. (생략)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
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私立學校
敎員

8. · 9. (생략)

② ~ ⑤ (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
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
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
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국가공무원법」 第2條(公

무원, 「초·중등교육법」 제
19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다]---
-----.

2. ~ 6. (현행과 같음)

7. 사립학교교원

8.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
 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
 된 地方公務員. 다만, 「정당
 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
 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國會議員
 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
 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5. ~ 9. (생략)

② (생략)

 -----정무직
 공무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에 따른 교원 및 「유아교육
 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에 따른 교원-----

5.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